



#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6. 1. 15.(목) 12:00 <1. 16.(금) 조간>	배포일	2026. 1. 14.(수)
담당 부서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담당자	정은선 팀장(043-880-5831) 배수현 과장(043-880-5833)

## [안전 실태조사 결과]

### 농촌지역 이용 많은 비도로용 ATV, 안전장치 및 인식 개선 필요

최근 농촌지역에서 고령자들이 사륜 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 이하 ATV)를 이동 및 운반용으로 널리 이용하면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ATV 교통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 ('22년) 69.2%(184건) → ('23년) 75.2%(197건) → ('24년) 75.7%(171건) \_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26.1.2)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판매하는 ATV 16종의 안전성과 농촌지역 ATV 사용자 16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전장치나 표시가 미흡한 ‘비도로용’ ATV로 도로를 주행하는 등 실제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ATV 전복사고 우려 크지만 해외기준 대비 안전 장치·표시 등 미흡

ATV는 농지·임야 등 다양한 지형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륜형 차량이다. 일반 이륜차와 달리 무게 중심이 높고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타이어 공기압·적재 무게·탑승 인원 등에 따라 전복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 이용하는 ATV 상당수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최근 3년간('22~'24년) 교통사고 중 ‘차량 전복’ 관련 사고율과 사망률 : ATV(15.4%, 29.5%), 이륜차(3.0%, 9.1%), 승용차(0.1%, 1.0%)\_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ATV를 소비재로 분류해 탑승자 보호장치(Operator Protective Device, OPD) 설치\*를 포함한 전복 안정성 기준 등 안전성능과 표시기준을 마련해 관리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사용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 ATV 좌우·뒤에 직선형이나 고리형 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이 전복될 경우 운전자가 깔리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장치로, 호주는 2021년 10월 이후 OPD 장착을 의무화 함.

해외기준\*을 준용해 조사대상 16종의 안전요소를 확인한 결과, 16대 모두 탑승자 보호장치가 없었고, ‘전복 위험성에 대한 경고’, ‘권장 타이어 공기압’과 ‘적정 탑승 인원 안내’ 등 안전 표시사항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ANSI/SVIA 1-2023)과 호주(ACCC 강제 표준)의 ATV 관련 기준

## □ 농촌지역 이용자 ATV 관리 소홀해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 필요

ATV로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증이 부여된 ‘도로용 ATV’ 차량을 구매해야 하며, 지자체에 사용 신고를 하고 전용 번호판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ATV를 원래 용도인 농지 주행 대신 도로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결과에서도 이용자의 62.5%(10명)가 도로 주행이 필요한 마을 내 이동에 ATV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18.8%(3명)는 ‘읍·면 소재지 이동’에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전체의 93.7%(15명)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농지나 마을 안에서만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86.6%, 13명)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했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한다’라는 응답도 18.8%(3명)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대상 ATV의 25.0%(4대)는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12.5%(2대)는 방향지시등이 없거나 고장 나 안전관리가 소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경남도청·전남도청·충남도청과 함께 ‘ATV 이용 안전수칙’ 포스터를 제작, ATV를 많이 이용하는 농촌지역에 확산하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전복사고에 대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회전할 때 감속 운행할 것, ▲비도로용 ATV로 도로를 주행하지 말 것, ▲도로용 ATV를 이용할 때는 사용신고 후 주행하고, 타이어 공기압·브레이크 등을 수시로 점검할 것을 당부하며, 향후에도 관련 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농촌지역 ATV 안전실태조사’ 개요

2. ‘농촌지역 ATV 안전실태조사’ 결과
3. 소비자 주의사항
4. 관련 법률 및 기준

**1 조사 목적**

농촌지역에서 도로 주행 및 농기계 겸용 수단으로 ATV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촌지역 ATV의 안전실태를 조사하여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에 기여

**2 조사 대상**

(실태조사) 시중 판매 중인 ATV 차량 16대

(현장조사) 농촌지역 ATV 실사용자 16명과 이용 중인 차량 16대

**3 조사 내용 및 방법**

① 시중에 판매 중인 ATV의 안전 요소(안전 및 편의장치, 표시사항 등),  
② 농촌지역 ATV 실사용자 이용실태(차량 관리 및 인식) 조사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	조사방법
• 국내외 안전기준 및 안전정보 검토	문헌조사
• 판매 중인 ATV 안전 요소 조사 - 안전장치 및 편의장치, 안전 관련 표시사항	실태조사
• 차량 안전 요소 조사 • 실사용자 이용 실태조사 - 차량 관리 현황, 인식	현장조사

**4 조사 기간**

2025. 4. 3. ~ 2025. 7. 31.(약 4개월)

## 1 농촌지역 ATV 실사용자 및 차량 이용실태 조사 결과

□ (차량 관리) 농촌지역에서 이용 중인 ATV 16대를 조사한 결과, 노후화와 관리 부실로 조명 장치와 후사경 등 기본 기능에 문제가 있었음.

- (조명 장치) 조사대상의 25.0%(4대)는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12.5%(2대)는 방향지시등이 설치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았음.
- (경적 및 후사경) 경적과 후사경이 없는 ATV가 각각 6.3%(1대)였음.
- (탑승자 보호장치) 조사대상 16대 모두 탑승자 보호장치가 장착되지 않았음.

구 분	후미등 고장	방향지시등 미설치 또는 고장	경적 미설치	후사경 미설치	OPD 미설치
개(%)	4(25.0)	2(12.5)	1(6.3)	1(6.3)	16(100)

□ (이용실태) 농촌지역 ATV 이용자 16명을 조사한 결과, 93.8%(15명)가 ATV를 농기계나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인식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인명 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 기간) ATV 평균 이용 기간은 13년이었고, 평균 주 6.5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용 목적) 주요 이용 목적은 응답자 모두 ‘농사일’이었고, ‘마을 내 이동(마을회관·이웃집 방문)’ 62.5%, ‘읍/면 소재지 이동(병원, 시장 방문)’ 18.8% 순이었음.

(단위 : 명, %)

순위	구 분	계
1	농사일(농지 주행 등)	16(100)
2	마을 내 이동(마을회관·이웃집 방문 등)	10(62.5)
3	읍/면 소재지 이동(병원·시장 등)	3(18.8)

\* 중복 응답

- (사용신고) 93.8%(15명)은 사용신고와 번호판 설치를 하지 않았음.
  - ATV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15명에 대해 이유를 질문한 결과 ‘주로 농지나 마을 안에서 이용하기 때문’ 86.6%(13명), ‘사용신고 대상임을 모름’ 6.7%(1명), ‘농기계라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음’ 6.7%(1명) 등이었음.

(단위 : 명, %)

순위	ATV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계
1	주로 농지나 마을 안에서 이용하기 때문	13(86.6)
2	사용신고 대상임을 모름	1(6.7)
3	농기계라서 사용신고 불필요	1(6.7)
	합계	100(15)

- (헬멧 착용) 81.3%(13명)는 헬멧을 거의 착용하지 않거나 가끔 착용했고, 18.7%(3명)만 헬멧을 항상 착용한다고 답했음.

(단위 : 명, %)

구 분	항상 착용함	거의 착용하지 않음	가끔 착용함	계
비율(응답인원)	3(18.7)	4(25.0)	9(56.3)	16(100)

- (사고 경험) 18.7%(3명)는 ATV 이용 중 안전사고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음.
- (위험 정도) 43.8%(7명)가 'ATV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응답했음.
  - ATV가 위험하다고 응답한 7명 중 42.9%(3명)가 '차량 특성상 무게 중심이 높아 전복될 가능성이 커서 위험하다.'라고 답했고, 28.5%(2명)가 '대중적이지 않아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답했음.
  - ATV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응답자 모두 사고 경험이 있었고, 이로 인해 ATV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였음.

(단위 : 명, %)

ATV 위험정도	매우 안전하지 않음	안전하지 않음	보통	안전함	매우 안전함
비율(응답인원)	2(12.5)	5(31.3)	4(25.0)	4(25.0)	1(6.2)
	7(43.8)				5(31.2)

(단위 : 명, %)

순위	ATV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계
1	차량 특성상 무게 중심이 높아 전복될 가능성이 높음	3(42.9)
2	대중적이지 않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험	2(28.5)
3	운전 미숙자들의 이용이 많아 사고 발생 우려	1(14.3)
4	차도에서 주변 차량과의 운행이 안전하지 않음	1(14.3)
	합계	7(100)

## 2 판매 중인 ATV 제품 실태조사 결과

□ (해외기준 준용) 미국(ANSI/SVIA 1-2023)과 호주(ACCC 강제 표준)의 ATV 관련 기준을 준용해 시중에 판매 중인 ATV 16대를 조사한 결과, ‘탑승자 보호장치’는 전 차량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표시기준에 모두 부합한 차량은 없었음.

- (탑승자 보호장치) 전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상해를 경감시키는 탑승자 보호 장치(Operator Protective Device, OPD)는 조사대상에 모두 장착돼 있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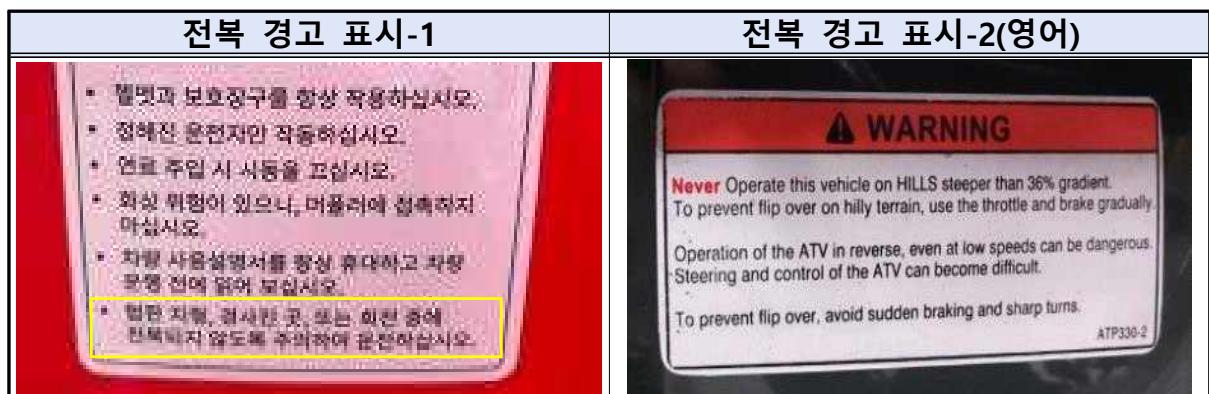
### 【탑승자 보호 장치(예시)】



\*해당 그림은 이해를 돋기 위해 AI로 생성함.

- (전복 위험 경고 표시) 56.3%(9대)가 ATV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전복사고 가능성 경고를 표시하지 않음.

구 분	전복 경고 표시	전복 경고 미표시	계
개(%)	7(43.7)	9(56.3)	16(100)



- (적정 탑승 인원과 권장 연령 표시) 적정 탑승 인원과 권장 연령 안내 표시가 없는 ATV는 각각 12.5%(2대), 18.8%(3대)였음.

구 분	적정 탑승 인원		권장 연령	
	표시	미표시	표시	미표시
개(%)	14(87.5)	2(12.5)	13(81.2)	3(18.8)

- (타이어 공기압 표시) 18.8%(3대)는 권장 타이어 공기압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았음.

구 분	타이어 공기압 정보 표시	타이어 공기압 정보 미표시	계
	개(%)	13(81.2)	3(18.8)
개(%)	13(81.2)	3(18.8)	16(100)

- (과부하 안전 표시) 조사대상 모두 과도하게 짐을 적재할 경우 차량 과부하로 인한 조향 능력 상실 또는 전복사고 위험을 표시하고 있었음.

# 농촌지역 ATV 이용 안전수칙



안전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 일반도로에서는 타지 않기

이륜 자동차로 신고하지 않은 ATV는  
도로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회전할 때는 천천히!

ATV는 빨리 돌면 쉽게 넘어집니다.  
회전할 땐 속도를 줄이세요.



## 동승 금지!

ATV는 1인용입니다.  
동승 시 전복 위험이 커지므로  
다른 사람을 절대 태우지 마세요!



## 출발 전 점검 및 정비부터

라이트,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정비하세요.



## 헬멧 착용은 필수

ATV 사고 시 머리를 다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보호장구(헬멧)를 착용하세요!



한국소비자원

## 1 국내

## □ 「자동차관리법」

- (사용신고 및 번호판)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여야 함(제48조, 제49조).
  - (사용신고 제외)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sup>\*</sup>가 없는 이륜자동차는 제외됨(시행규칙 제98조의7).
    - \* 구동축의 한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의 회전력 차이를 만들어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 「도로교통법」

- (보호장구 착용)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인명 보호장구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함(제50조).

## 2 해외

## □ (미국) 「미국 국가 표준 : 사륜형 ATV, ANSI/SVIA1-2023」

- 사륜형 오토바이를 도로 외 차량(off-highway vehicle)으로 정의 및 분류하고 장비 및 구성, 성능, 환경 및 기술 요건 등을 규정함(2025년 1월 1일 시행).
  - (장비 · 구성) 브레이크, 스파크 방지 장치 등 차량 기본 장치 요건과 사용자 매뉴얼, 경고 표시 등 운전자 정보 제공 요건을 규정함.
  - (성능) 속도 제한, 주행 및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전도 안전성 요건 등을 명시함.
  - (환경 및 기술 요건) 소음 제한, 화상 방지를 위한 고온 표면 기준, 연료 계통 안전 확보 기준을 마련함.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해당 기준을 강제 표준으로 채택함에 따라 모든 ATV 제조·판매업자는 내구성(공기압, 과부하 경고 등), 유형별(연령, 탑승 인원 등) 안내/경고 라벨 표시, 설명서 구비 의무 등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호주) 「쿼드 바이크 강제 표준(Quad Bikes Mandatory Standard)」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쿼드바이크를 소비재(Consumer Goods)로 정의·분류하고 관련 사망 및 부상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강제 안전 표준을 도입함.
- 강제 표준은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전 세계 최초로 탑승자 보호장치(Operator Protective Device, OPD) 장착을 의무화함.
  - (1단계) 화재 예방을 위한 스파크 방지기 의무장착, 전복 위험 경고 표시 및 전도 안전성 시험 결과 등 안전 정보와 사용자 매뉴얼 제공을 의무화함(2020년 10월 11일 시행).
  - (2단계) OPD 장착 또는 OPD 장착을 위한 통합된 설계 제공, 미국 표준(ANSI/SVIA 1-2017)·유럽 표준(EN 15997:2011)의 최소 안전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측면( $28.81^\circ$ ) 및 후면( $38.65^\circ$ ) 전도 안전성 시험 결과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2021년 10월 11일 시행).